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지원 및 기념홍보사업		
사업비 (당해년도)	95,000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95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	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여성정책담당관	윤희천 2133-5005	오미영 2133-5021	김지은 2133-503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100,000	(x-) 95,000	(x-) △5,000	(x-) △5
사회보장적수혜금	(x-) 100,000	(x-) 95,000	(x-) △5,000	(x-) △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생활안정지원금 95,000,000원	=	95,000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안정지원

□ 사업근거

○ 법령상 근거 :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

-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’20. 1.1. ~ ’20. 12.31.

○ 지원대상 :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18명

○ 지원방법 : 분기별 해당자치구 보조금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

-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달25일에 지원
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

□ 추진경위

○ 「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안」에 의거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및 진료비, 장제비 지원

□ 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5,000	
기본계획수립	2020.01~2020.02		기본방침 수립
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급	2020.01~2020.12	92,000	자치구 재배정을 통한 보조비 지원
장제비 지급	2020.01~2020.12	3,000	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 1,000천원 지급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25명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
2018년도	○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20명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
2019년도	○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19명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-피해여성 1명이 경기도로 전출하여 18명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138,000	(x-) 0	(x-) 0	(x-) 138,000	(x-) 115,544	(x-) 0	(x-) 22,456
2017	(x-) 130,000	(x-) 0	(x-) 0	(x-) 130,000	(x-) 105,327	(x-) 0	(x-) 24,673
2018	(x-) 115,000	(x-) 0	(x-) 0	(x-) 115,000	(x-) 95,538	(x-) 0	(x-) 19,462